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판 결

사 건 2025고단69 가. 무고  
나. 무고교사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유용훈(기소), 최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수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5. 4. 10.

###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24. 3. 3.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24. 2. 중순경부터 2024. 3. 2.경까지 구미 소재 모텔 및 대구 소재 모텔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총 13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자에 피고인은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구미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 2. 피고인 B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24. 1.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형 중일 당시 면회를 온 피고인의 처 A로부터 "C와 불륜 관계에 있으며 그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2024. 3. 2.경 대구 소재 D모텔에 C와 함께 있던 A를 데리러 갔을 당시에 A가 C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해당 모텔에서 A가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4. 3. 2. 저녁경 C를 찾아가 C에게 '가정을 파탄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으로 말하며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24. 3. 3. 오전경 구미시 소재 구미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 골목 부근에서 C 및 그 부모를 만나 다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 측에서 이



를 거절하자, C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C를 압박함과 동시에 C와 A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날 A에게, "C가 2024. 2. 중순경부터 2024. 3. 2.경까지 모텔에서 A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 조사 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C를 무고하게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전향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가 A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음에도, 'C가 2024. 2. 중순경부터 2024. 3. 2.경까지 구미 소재 모텔 및 대구 소재 모텔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총 13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C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 속기록(제1회 조사), 고소취소장, 수사보고서(고소취소장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강간당하지 않았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A가 강간당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_\_\_\_\_